

##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올해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 청산율 87% 달성
-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을 개선하고 체불행위의 경제적 비용 재설계
-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제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을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용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은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용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 [체불행위의 증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 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1: 「임금체불 근절 대책」 주요내용

첨부 2: 「임금체불 근절 대책」 브리핑문

담당 부서 <총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2-7526)
		담당자	서기관	신솔원 (044-202-7544)
			사무관	이찬웅 (044-202-7529)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 부서 <공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044-202-7528)
			사무관	김보경 (044-202-7521)
담당 부서 <공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권유리 (044-202-7072)
			사무관	우이용 (044-202-7563)
담당 부서 <공동>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8550)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044-215-8551)
담당 부서 <공동>	법무부 공공형사과	책임자	과 장	김형원 (02-2110-3280)
		담당자	검 사	이수영 (02-2110-3533)
담당 부서 <공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책임자	과 장	조숙현 (044-201-3518)
		담당자	사무관	최영량 (044-201-3578)
담당 부서 <공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종선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설민아 (044-200-4953)
담당 부서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4-7440)
		담당자	사무관	정승화 (044-204-7442)

목표

정부 임기 내

- ✓ 임금체불 절반 감축 (2조원 → 1조원)
- ✓ 임금체불 청산율 95%

대책

'25년 내 단기 집중 핵심과제

- |             |                          |
|-------------|--------------------------|
| 1 예방감독 강화   | 체불 집중감독 - 100% + α       |
| 2 체불 청산지도   | 발생한 체불은 신속 해결            |
| 3 선제적 지원    | 사업주 응자제도 확대 개편           |
| 4 노동자 보호 확대 | 지원은 강화, 변제금 회수는 확실하게     |
| 5 제재 강화     |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25. 10월) |

✓ '25년 청산율 87% 달성    ✓ '26년 체불 감소추세 전환의 전기 마련



구조적 임금 체불 근절

- 1 **하도급 내 임금 지급제도 개선**
  - 임금 구분지급 의무 법제화
  -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 2 **업종·부문별 하도급 개선**
  - 불법하도급 근절
  - 퇴직연금 의무화
  - 공공부문 하도급 개선



상습 체불 제재 강화

- 1 **법정형 상향**
  - 3년 이하 → 5년 이하
- 2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재범 제재 강화**
  - 반의사불벌 적용제외 확대
  - 과태료·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 3 **공공재정 투입 제한**
  - 미청산 기간 중 정책자금 용자 제한



사회적 인식 개선

- 1 **사업주의 준법경영 자정노력 유도**
  - 체불 없는 일터
  -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 2 **「임금 체불 = 임금 절도」 메시지 확산**

추진체계

- ✓ **범정부 협의체**
    - ➔ **이행 점검, 효과성 평가, 추가·보완사항 신속 추진**
- ※ 범정부TF(장관급) - 실무협의회 중층적 운영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방향**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올해도 늘고 있습니다.
- 경기 부진 등 경제 상황의 영향과 함께,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이 생겨나기 쉬운 산업구조,  
반복되는 체불 등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이  
임금체불의 근본 원인입니다.
- 정부는 다각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에 관계부처가 집중하여  
함께 역량을 모아야 구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그동안 관계부처TF를 가동하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핵심은

- 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고,
- ②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임금체불로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고,
- ③ 체불을 증대한 범죄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하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여

- 정부 임기 내에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만한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겠습니다.

□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단기 집중 핵심과제

□ 먼저, 올해 하반기는 체불임금이 감소추세로 전환되도록 가능한 행정수단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초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임금체불 등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탈세행위 등 불법행위를 국토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공유하여, 종합적인 제재를 통해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고, 체불하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 추석에는 최소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명절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 청산지도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두고 접수되는 체불첩보 등에 신속히 반응하는 ‘체불 스왑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투입하겠습니다.
-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하여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응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도산 시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까지 확대하여 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체불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변제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회수하겠습니다.
  - 국세체납의 경우와 같이 강제적인 징수절차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올 10월 23일에는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 체불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심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 임금체불을 경영상 막대한 비용으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법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 구조적 임금체불 근절

- 두 번째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여 체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의 경우 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당초의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고 이것이 체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하여 발주자와 하도급 노동자 간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 조선업종 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 업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불법적인 하도급은 근절해야 합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심층적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입니다.

- 대부분 퇴직 시점에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보다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체불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상습 체불 제재 강화

□ 세 번째로, 상습체불 등 부도덕하고 일상적인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 상습체불 사업주는 전체 체불사업주의 13%에 불과한데, 이들이 저지르는 체불액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체불행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해서 체불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사업주는 더 이상 불법을 통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를 확대하며,

- 명단공개 이후에도 다시 임금을 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 그 불법성에 비례하여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겠습니다.
- 한 번이라도 악의적 체불행위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정책자금융자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하겠습니다.
-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업하여 주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이고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근절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인식을 바꾸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 정부는 사업주가 자정노력과 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환경을 마련해 제도와 현장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종별 협회 등이 임금체불 근절과 관련한 모범사업장 등을 발굴하여 포상, 명예고취 프로그램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도록 하고,
- 정부도 캠페인을 통해 체불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 체계

- 온 나라가 나서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오늘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체불 발생, 청산 등 대책의 이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불 데이터를 선진화하여  
체불사건을 세밀하게 유형화하고 다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 추가·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면서,  
필요시 반의사불벌 폐지 등을 포함해  
더욱 강력한 방안까지도 유관부처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체불행위는 임금절도이자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현장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고,  
더 이상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